

## 미국의 교통사고 신고제도와 시사점

송윤아 연구위원

요익

- 경찰과 보험회사 간의 교통사고 확인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동차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가 만연하고 사고 당사자 간 과실 책임에 대한 갈등이 빈번하다. 미국의 경우 사고 당사자에게 사고발생 후 수일이내로 주정부 소관부서·경찰서 등 공공기관에 사고현장 사진을 포함한 사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손실 가공 및 과장을 방지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 또한 이중조사로 인한 사고 당사자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경찰은 보험회사와 사고조사기록을 공유한다. 우리나라도 교통사고의 신고 및 조사제도를합리화함으로써 부정청구, 사고 당사자 간 갈등, 이중조사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 1991년 대법원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일 지라도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할 때에만 해당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경찰신고 의무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됨.
  - 이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유도하고 있으며, 사고 당사자들은 관행적으로 경찰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을 통고하고 사고처리를 종결함.
    - 치사사고, 도주 또는 주요 11개항 위반사고, 치상사고와 물피사고 중 미합의 또는 보험미가입 사고를 제외한 교통사고는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면제받게 됨.
  -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보험처리되고 있는 교통사고가 약 80%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공공수사기관의 공백을 메우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이는 사고의 조작 및 가공, 피해 과장 등 부정청구를 유발하는 한편 공정한 사고 내용의 규명을 어렵게 함으로써 사고 당사자 간의 갈등을 초래함.1)

- 사고당사자의 신속한 사고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보험회사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 피해 정도 및 과실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사고 당사자 간 갈등의 단초가 됨.
  - 「상법」 제657조는 사고발생 시 지체 없는 통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 이상이기 때문에 사고발생 즉시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비율은 전체 보험금 청구건의 과반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임.
- 더욱이 보험회사의 경우 사고발생 경위, 사고원인, 피해 정도, 과실비율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사고 현장사진 등의 제출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의 사고 조작 및 가공이 쉬움.
- 또한 보험회사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손해사정 및 과실평가를 위한 사고조사 시 사고 당사자의 진술 및 출석 등을 강요할 수 없고, 의료제공자나 정비소의 성실한 협조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음.

## ■■ 미국의 교통사고 신고제도는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 정확한 사고내용 규명과 이를 통한 사고 당사자 간 갈등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특성상 개별주마다 약간씩 상이한 법을 가지고 있으나 정확한 사고내용 규명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고 당사자는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주정부 소관부서·경찰서 등 공공기관에 사고발생 후 수일 이내로 신고하여야 함.
- 특히 사고현장에 대한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출동하여 사고조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사고현장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함.
- 또한 경찰과 보험회사가 사고조사기록을 공유함으로써 이중조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제거함.

## ## 구체적으로 미국 뉴욕주의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제도는 다음과 같음.

- 둘째, 피해자가 사고현장에 없는 물피사고의 경우 사고 운전자는 가능한 빨리 가장 가까운 경찰관이나 법집행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피해자가 사고현장에 있을 경우 사고운전자는 경찰을 포함한 법집행기관에 해당 사고를 신고할 의무가 없음.
- 셋째, 경찰은 조사를 통해 작성된 사고조사보고서를 5일 이내에 뉴욕주정부의 차량국(DMV)에 제출 해야 함.<sup>2)</sup>

<sup>1)</sup> 송윤아(2011), 「자동차사고의 경찰신고 활성화와 보험사기」,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sup>2)</sup> N.Y. VAT. LAW § 603-a: NY Code-Section 603-A: Accidents: police authorities to investigate.

- 넷째, 1,000달러 초과 물피사고 및 인피사고의 경우 경찰의 차량국 보고와는 별도로 사고 당사자는 사고발생 후 10일 이내에 차량국에 사고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게 됨.3)
- 마지막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 주정부 차량국의 모든 사고보고서는 4년 동안 보관되며 사고보고 서는 사고발생일 3개월 후부터 사고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되며 뉴욕주 경찰이 작성한 사고조 사보고서는 이보다 빨리 이용 가능함.

| 구분                | 우리나라  | 미국 뉴욕주   |
|-------------------|---|--|
| 공공기관<br>신고        | <ul> <li>경찰의 조직적 구호조치가 필요한 인<br/>피사고의 경찰신고의무 신고기준에<br/>대한 자의적 해석 가능</li> </ul>                                    | <ul> <li>경찰과 주정부 소관부서에 사고현장<br/>사진을 포함한 사고신고서 제출</li> <li>모든 인피사고와 1,000달러 초과</li> <li>물피사고의 신고의무</li> </ul> |
| 보험회사<br>통지        | <ul> <li>사고통지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고당사자의 통지 지연</li> <li>보험금 청구 시 과실책임 및 손실 규모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강요할 수 없음</li> </ul> | 청구할 경우, 사고신고서 및 경찰 사   |
| 경찰과 보험회사간<br>정보교류 | <ul> <li>경찰의 사고조사서를 열람할 수 없기<br/>때문에 보험회사의 이중조사가 불가<br/>피함.</li> </ul>  | ● AF1/GAFAFO  <del>=</del> 0 AF0   |

〈표 1〉 우리나라와 뉴욕주의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제도

## ## 우리나라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과정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다음을 제시함.

- 첫째, 자동차보험금의 과잉·허위청구를 방지하고 정확한 사고내용의 규명을 위해 사고 당사자로 하여금 사고현장에서 유선으로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을 통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경찰 또는 보험회사의 현장출동이 이뤄지지 않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사고 당사자로 하여금 사고현장사진을 첨부한 사고신고서를 작성하여 일정기한 내에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경미한 사고의 당사자가 교통사고처리를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고현장을 보험 회사에 전송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sup>3)</sup> N.Y. VAT. LAW § 605: NY Code-Section 605: Report required upon accident.

- 셋째, 이중 신고 및 조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사고 통합DB 구축을 통하여 경찰과 보험회사 간 사고신고내용과 사고조사기록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사고가 접수되면, 해당사고는 경찰과 보험회사가 공유하는 교통사고 통합DB에 자동 전송되어 경찰에 신고된 사고는 당사자 보험회사에 통지되고 보험회사에 통지된 사고는 경찰에 통지됨.

사고발생 구호조치 및 정보교환 사고당사자 신고 경찰의 조직적 조치 가 필요한 인피사고 경찰미신고 사고 견인차, 구급차 보험회사: 신고내용 입력 경찰: 신고내용 입력 교통사고통합DB 사고현장 기록 및 제출 중한사고 또는 사고당사 자의 요청이 있는 사고 경미한 사고 현장출동 및 조사 사고당사자는 사고접수 앱 이용 사고현장 사진 전송 또는 사고신고서 작성 및 경찰: 조사내용 입력 현장출동 및 조사 보험회사: 조사내용 입력

〈그림 1〉 교통사고 처리과정 합리화 방안

kiγi